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국내 증권사를 대리하여 중국 골프장 매각 관련 자문.....	2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화물대금 추심 소송 관련 자문.....	2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법률실사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안전사고 배상 관련 자문.....	4
[러시아]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대출 리파이낸싱 업무 관련 자문.....	5
국내 보안업체를 대리하여 러시아 공기업과의 공급계약 관련 자문.....	5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6

■ 해외업무 논란 ■

[중국] 노무파견 규제 강화 추세.....	7
[베트남] 외국 판결 / 중재결정의 집행 승인 경향.....	9
[러시아] 러시아 정부조달 체계 전면 개편.....	13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	17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	17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제정.....	17
[베트남] 법인세 인하.....	18
[캄보디아] 캄보디아 회사법상 최저 액면가(4,000리엘) 제한에 대한 공모 및 상장기업의 예외 인정.....	19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사회복지부, 2013년 3월 21일).....	19
[러시아] 외국인 이사의 임금(보수)에 대해 소득세 13% 적용 예정.....	20
공동사업약정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발표.....	20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 입법예고.....	20
2013년 9월분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인상.....	21
[일본] 일본 태양광사업의 새로운 모델 '증권화 구조'.....	22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국내 증권사를 대리하여 중국 골프장 매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증권사를 대리하여 중국 골프장 매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주성훈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화물대금 추심 소송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화물대금 추심 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임호 중국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자문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법률실사 관련 자문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법률실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임호 중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안전사고 배상 관련 자문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안전사고 배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대출 리파이낸싱 업무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극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리파이낸싱 업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보안업체를 대리하여 러시아 공기업과의 공급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보안업체가 러시아 공기업과 체결하는 공급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노무파견 규제 강화 추세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불거진 노무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8 일에 「노동계약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시성, 대체성 및 보조성 직무에만 노무파견 형식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직원 총수 대비 노무파견 직원의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양적으로도 노무파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비율기준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여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 지난 8월 7일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수렴안은 노무파견 직원 비율 등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따르면 노무파견 형식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추세입니다.

다만 「의견수렴안」은 2013년 9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정은 수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의견수렴안」에서는 「개정안」 발표 이후 무성한 추측이 이어졌던 노무파견 직원 비율의 상한선을 '보조성 직무의 노무파견'직으로 축소하고 그 비율을 10%로 정하였습니다.

즉 「개정안」에서 정한 임시성, 대체성 직무의 경우 '임시성 직무'는 '존속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직무', '대체성 직무'는 '근로자가 학습, 휴가 등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직무'로 해석하여 임시성, 대체성 직무의 경우 그 수를 늘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보조성 직무'에 대하여 '주영 직무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非주영 직무'로 해석하고 있는 바, 특정 사용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직무가 과연 '非주영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확대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조성 직무'에 대한 정의 또는 구분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피하고 수적으로 제한을 둬으로써 사용자에게 '보조성 직무'에 대한 해석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보조성 직무'를 대거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기술은 '보조성 직무'에 대한 구분기준을 획일하게 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 볼 때 노무파견직은 '보조성 직무'에 대량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이므로 '노무파견 비율'은 실질적으로 '보조성 직무의 노무파견 비율'과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수렴안」에서 정한 10%의 '노무파견 비율' 상한선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 다수설로 인정되던 일부 지방 규정에서 정한 3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한편, 노무파견의 현행 실무에서는 대다수 국유기업에서 파견인력을 대거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비율이 총 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기업도 적지 않은 바, 많은 국유기업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안」의 '보조성 직무의 노무파견 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무파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외국 판결 / 중재결정의 집행 승인 경향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1. 집행 승인 판결의 대상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 중재기관의 결정을 베트남 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대상 판결을 한 국가 또는 중재지가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국인 경우가 집행 승인의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동일 조약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외국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베트남이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가입한 다자간 조약이 없고, 베트남과 한국 간에 양자간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법원 간에 상대방 국가 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상호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에 베트남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집행 승인 재판의 진행 원칙

집행 승인 재판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고, 다수결 원리로 결정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5조 제5항). 집행 승인 재판은 외국 법원이 판결한 분쟁의 실질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과 제출된 증거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

3. 집행 승인의 기각 사유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6조).

- ① 외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② 피고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베트남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 ④ 베트남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의 경우
- ⑤ 강제집행 기간이 본국법 또는 베트남법에 따라 경과한 경우
- ⑥ 베트남 내에서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외국 중재 결정에 대한 집행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70조).

- ① 중재 합의 당사자가 본국 법에 따른 계약 체결 능력이 없는 경우
- ② 중재 합의가 준거법(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 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력이 없는 경우
- ③ 피고가 중재위원의 선임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소송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 ④ 중재 결정이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관한 경우

- ⑤ 중재위원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중재 합의(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 국가의 법)에 위반될 경우
- ⑥ 중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⑦ 중재 결정이 중재지 국가 또는 준거법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⑧ 대상 분쟁이 베트남 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 ⑨ 베트남 내에서 외국 중재 결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4. 집행 승인 경향

베트남 법원이 외국 법원 판결이나 중재 결정에 대한 집행 승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집행 승인을 기각하는 이유로 많이 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악됩니다.

첫째, 피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

둘째, 외국 법원 판결이나 중재 결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

2009년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 승인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시송달 방법은 베트남 법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민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적법한 송달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가 한국 법원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집행 승인을 기각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5. 강제집행의 어려움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기구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경매기일이 잡히는 데에만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결정을 기초로 베트남 내에서 집행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베트남 현지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분쟁 해결 기구로는 법원보다 중재기관(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이 영어로 진행하고, 국제 거래 관계에 익숙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등 외국인에게 이점이 많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러시아 정부조달 체계 전면 개편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 시작하며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연방정부 총리가 어느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부조달규모는 약 8 조 루블(약 2,429 억 달러)로 러시아 GDP 의 약 5 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러시아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5 년에 제정한 「국가 및 지방 수요용 재화공급, 용역수행, 서비스제공 발주에 관한 연방 법률」(제정 2005 년 7 월 21 일, 최근 개정 2013 년 12 월 30 일)(이하 '국가발주법')을 대체하는 「국가 및 지방 수요용 재화용역서비스 구매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 법률」(이하 '국가계약법'¹⁾)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2013 년 4 월 5 일 동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발주법은 약 8 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효력이 상실되며, 국가계약법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²

국가계약법 초안은 기존의 국가발주법의 한계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의 법률 시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들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국가발주법 제정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매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구매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 부패 및 기타 권리 오남용 예방, 국가 및 지방용 재화용역서비스의 근본적인 품질제고

¹ 본 글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본문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² 국가계약법의 일부 규정들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확보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의 정부구매³ 규칙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요자인 국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민간기업도 새로운 정부구매 절차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는 정부의 하위규정에 규정될 것이므로, 하위 규정 제정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정부구매절차의 실행메커니즘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호에 걸쳐 국가계약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한 경우 국가발주법과의 차이점을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 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1) 구매계획, 2) 공급자선정, 3) 계약체결, 4) 계약이행 특례, 5) 구매 모니터링, 6) 구매감사, 7) 구매 준법감독 등의 사항을 비롯하여 정부구매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규율합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러시아연방 또는 러시아연방의 주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즉, 입법·사법·행정부 소속기관 및 연방·주·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모두 포함),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즉, 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기금, 고용기금, 기술발전기금 등), 공단입니다.

3. 계획 입안

³ 본 글에서는 편의상 재화공급, 용역공급, 서비스 제공을 모두 '구매'라는 개념으로 통일하기로 합니다. 본문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는 반드시 구매계획⁴을 세워야 합니다. 구매계획과 관련하여 2개의 문서가 작성·승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매계획(План закупок)과 일정계획(План графиков)입니다.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구매계획과 일정계획은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공고되어야 합니다.

1) 구매계획

구매계획은 법률을 근거로 발주기관의 목적과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매계획은 국가 예산과 함께 수립되며, 러시아연방 예산법률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수립됩니다.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법률로 정한 구매 식별코드, 2) 구매 목적, 3) 구매 목적물의 명칭 또는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 4) 재화·용역·서비스 구매 수량, 5) 구매를 위한 금융담보규모, 6) 예상구매 기간, 7) 구매 근거, 8) 구매정보(특정 공급자가 재화·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9) 의무적인 공론회 개최 및 결과 정보, 10) 국가의 필요에 따른 추가 정보입니다.

2) 일정계획

구매계획에 따라서 국가는 일정계획을 작성합니다. 일정계획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국가의 재화·용역·서비스 수요 목록을 반영한 문서입니다. 일정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법률로 정한 구매 식별코드, 2) 구매 목적물의 특성을 명시한 목적물의 명칭 또는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즉, 구매 수량, 예상 기간, 공급 일정, 계약 개시(최대) 금액, 수의계약 당사자와의 계약금액, 구매 근거, 선급금액, 대금지급단계 등), 3) 구매 절차 참가자에 대한 추가 요건, 4) 공급자 결정 방법 및 이러한 선정방법의 근거, 5) 구매 개시일, 6) 구매 절차 참가자 신청 담보 및 계약 이행

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구매계획과 일정계획은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정계획 규정 중 일부는 2016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 금액에 관한 정보, 7) 법률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완성으로 제작된 목적물의 순환주기 금액 기준에 관한 정보, 8) 법률에 따른 금융관리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정계획은 매년 1년 단위로 작성되고, 국가는 일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발주법에서도 일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자계약법의 내용과 구분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노동계약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무파견범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노무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직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정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직원의 노동 보수에 대하여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

지난 6월 8일, 국무원 반공청은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였으며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외자보험관리조례에서는 외국보험사의 경우 국제통화로만 출자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인민폐로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내용은 보험회사의 출자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폐의 국제화 위상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제정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을 갈음하는 법규로 동 조례에서는 F비자, L비자를 세분화하였고 외국의 고급인재와 전문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R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비자 종류는 기존의 8가지에서 12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법인세 인하

베트남 국회는 2013년 6월 19일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율을 인하(기존 25%)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매출(revenue)이 VND 20,000,000,000(약 USD 952,380) 이하인 기업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출 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석유 기타 희귀 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회사의 특성에 따라 32% 내지 5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첨단산업과 낙후지역 등 특별한 조세혜택(tax incentives)을 받는 기업은 그 요건에 따라 10% 내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회사법상 최저 액면가(4,000리엘) 제한에 대한 공모 및 상장기업의 예외 인정(상무부, 2013년 1월 31일)

캄보디아 상무부는 2013년 1월 31일 회사법 제143조, 제144조에 따른 주식 액면가액 결정에 관한 부령 제57호(Prakas No. 057 on Determination of Share Par Valu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3 and 144 of Law on Commercial Enterpri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법상 최저 액면가(1주당 4,000리엘)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은 주식의 공모가격을 낮춰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의 공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사회복지부, 2013년 3월 21일)

캄보디아 사회복지부는 봉제공장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의 61달러에서 73달러로 인상하고 보건수당 5달러 및 훈센 총리의 권고에 따라 추가수당 2달러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8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새로운 최저임금은 201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외국인 이사의 임금(보수)에 대해 소득세 13% 적용 예정

세법상 비거주자인 이사회 소속 (외국인)이사의 개인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러시아연방 국세청의 질의답변(2013년 8월 15일, No. AC-4011/14090@)에서, 러시아연방 국세청은,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전문직 자격으로 근로행위를 하여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3%의 소득세율을, 이를 제외한 러시아연방 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개인이 수령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나, 러시아연방 국세청은 해당 이사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에서 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이사도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이들이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30%가 아닌 13%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약정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발표

2013년 8월 8일 러시아연방 반독점청은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공동사업약정의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 11조의에서 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승인 대상으로, 대표적인 행위로는 가격(요금), 할인, 마진 설정 또는 유지, 입찰에서의 가격 인상, 인하 또는 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 입법예고

러시아정부는 「토지 및 건물, 건축물, 미완공시설물 소재지의 정확한 경계 확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리보장 제고, 토지제공절차 간소화, 토지 관리효율성 제고, 과세기반확대 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국가부동산대장에 경계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분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인상

2013년 8월 19일 러시아경제개발부 모니터링 결과 중동 및 로테르담 원유시장에서 우랄산 원유의 평균가격은 1톤당 801.8 USD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원유 - 400.7 USD(8월 379.8 USD)
- 나프타 및 석유제품 - 360.6 USD(8월 341.8 USD)
- 디젤, 벤젠, 톨루엔 등 - 264.4 USD(8월 250.6 USD)
- 액화석유가스 - 75.5 USD(8월 40.5 USD)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태양광사업의 새로운 모델, '증권화 구조'

2012년부터 시행된 고정매수가격제도(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고정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화'라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오카야마현의 세토나이시에 25만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증권화를 통한 투자를 받아 건설에 착수하였고, 올해 5월에는 마더스 상장기업인 인터액션이 증권화를 통하여 가고시마에 1.5메가와트 규모인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가 일본 내에서 다수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쯔이물산과 동경해상AM투자신탁은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업연금 등으로부터 200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증권화는, 종래 일본의 부동산 증권화에 사용되었던 비즈니스 구조를 활용하는 것인데, 투자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되는 증권화 구조는 투자자의 에퀴티를 최소화하고, 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논리코스 론(non-recoures loan)을 조달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각되고 있습니다.